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64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5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김영진의원안, 정부안)	3

I.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06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8.

(3) 회 부 일 : 2025. 8.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 (이하 “공매등”이라 함)을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매매 및 보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통적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거래구조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띄고 있어 매각 업무의 대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3조제1항제5호 신설).

2.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265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 고액·상습체납자 감치(監置)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김영진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공매등의 대행(제103조제1항) ○ 관할 세무서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 - 공매(제1호) - 수의계약(제2호)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제3호) - 금전의 배분(제4호) <u><신 설></u>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가상자산의 매각</u> ☐ 부 칙 ○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김영진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6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2)

☐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강제징수는 ①재산의 압류, ②압류재산의 매각, ③청산의 절차로 이루어짐.

이 중 ‘압류’는 채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시키는 관할 세무서장의 행위를 말하며 가상자산의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5조1)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1) 「국세징수법」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채납자[같은 법

또한, ‘압류재산의 매각’이란 징세관서가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기 위해 그 소유권을 채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 전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금전 외의 재산을 환가하는 수단이며, 현재 가상자산의 매각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6조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하고 있음.

[연도별 국세청 가상자산 징수실적]

(단위: 억원)

구분	징수실적 (①+②)	현금징수(①)	채권확보(②)		
			소계	압류 등	매각
합계	1,461	730	736	718	18
2021년	712	425	287	287	-
2023년	368	187	181	181	-
2024년	381	113	268	250	18

주: 2022년 강제징수 업무 대신 추적조사 실시

자료: 국세청

□ 「국세징수법」은 채납액의 완전한 징수와 채납자의 보호를 위하여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매’³⁾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채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채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채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3) 공매(公賣)란 공기관에 의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그리고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를 말함.

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채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 제외)이 공매의 대상임.

다만, 공매의 대상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사업자를 통한 즉시 매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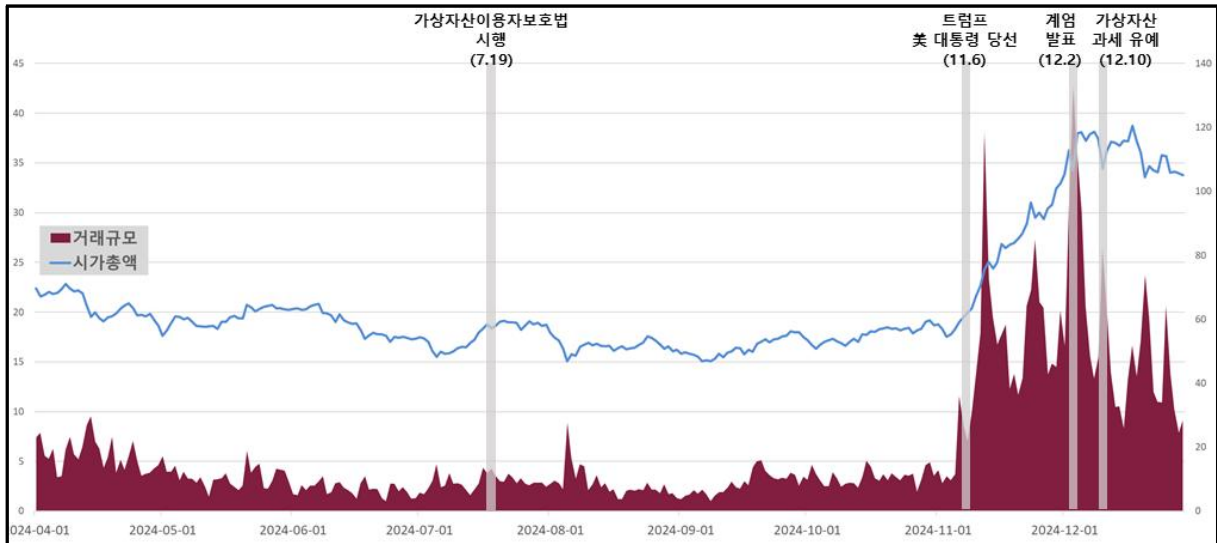
그러나, 세무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각 경험이 적어 전문성 축적이 제한적이며, 세무서별로 별도의 계정과 계좌를 관리해 업무량이 증가하여 가상자산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지연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⁴⁾

□ 개정안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의 특수성⁵⁾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계정의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매각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4) 관할 세무서장(채납담당자)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기 위해 각각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속하여 매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가상자산 매각 시 세무서(133개)마다 가상자산 거래소(5개) 계정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음.

5)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 예측이 어렵고, 가격변동이 심한 자산으로 매각결과에 따라 채납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또한, 채납담당자의 가상자산 매각거래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시세 변동에 따른 채납자와의 민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매각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 및 시가총액 추이('24.4월~'24.12월)]



자료: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5. 5.

□ 2024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1,34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상반기(1,087조원) 대비 약 24% 증가한 수치이며, 이러한 거래규모의 성장세는 가상자산이 국내 경제 및 자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⁶⁾ 및 가상자산 압류 규모 확대⁷⁾로 인해 국세 체납 등과 관련하여 압류된 가상자산의 매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대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전국 세무서에서 의뢰되는 가상자산의 매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

6) 비트코인 가격: (21.1.1.) 56백만원 → (24.1.1) 139백만원 → (25.1.1) 151백만원

7) 가상자산 징수실적(총 1,461억원): ('21년) 712억원, ('23년) 368억원, ('24년) 381억원

※ 2022년 강제징수 업무 대신 추적조사 실시

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납 재산의 효율적인 회수와 공매 절차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실효성 있는 조치로 보여짐.

□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상자산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 매각대행 절차, 매각 시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사례가 없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상자산계좌, 전산, 인력, 규정 등)도 현재는 미비한 상황이므로 사전 준비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기간을 2026년 7월 1일에서 2026년 10월 1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4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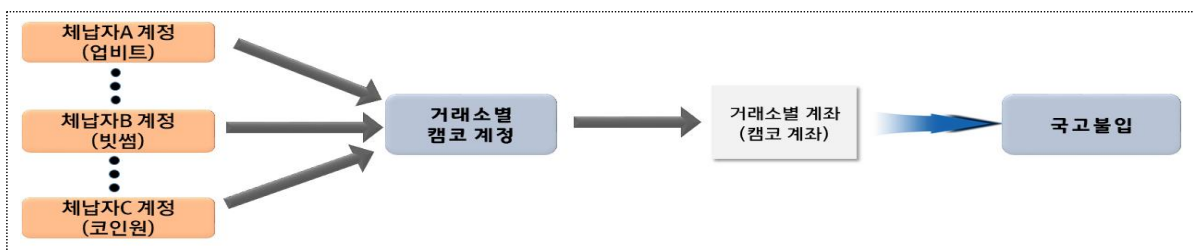
가상자산 매각 · 추심 및 국고불입 절차

□ 국세청 추심(현행)



- ① (세무서장) 거래소별 계좌·계정 개설(133개 세무서, 5개 은행), 계좌·계정 연결, 채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통지(매각 예정일 명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전요청서 송부
- ② (가상자산 거래소) 채납자 계정의 가상자산을 세무서 계정으로 이전
- ③ (세무서장) 매각예정일에 이전된 가상자산 **당일 매각**
* 매각예정일을 도과하여 매각 시 채납자 민원 또는 소송 가능성
- ④ (세무서장) 매각 후 현금 거래소별 세무서 계좌로 이체 출금
- ⑤ (세무서장) 세무서 채납정리 계좌로 이체
- ⑥ (세무서장) 채납정리계좌에서 국고불입

□ 캠프 위탁(개정안)



- ① (세무서장) 채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통지, 캠프에 가상자산 매각대행 의뢰 및 채납명세 제공
- ② (캠프) 채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대행 통지
- ③ (캠프)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전요청서 송부
- ④ (캠프) 이전된 가상자산 매각 → 거래소별 계좌 이체 → 국고 불입(기 제공된 채납명세)